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3가지 유형(일반형, 일반형(지역특구 연계형), 민간투자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사항·선정절차 등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이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 필요

< [참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스마트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2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의 유·무형자원(문화, 식품, 공간, 예술, 관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지역 혁신가를 뜻한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17개시도)에 위치해야 한다.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 지역성이 배제된 창업을 영위하는 자는 로컬크리에이터로 보지 않는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로컬크리에이터 총 140명 내외***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① **(일반형)** 업력 7년 이내 (예비)로컬크리에이터
- ② **(일반형 : 지역특구연계)** 지역특구(참고3)에 소재하며, 지역특구 특화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 ③ **(민간투자 연계형)**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3천만원 이상을 투자유치(누적치) 받은 (예비)로컬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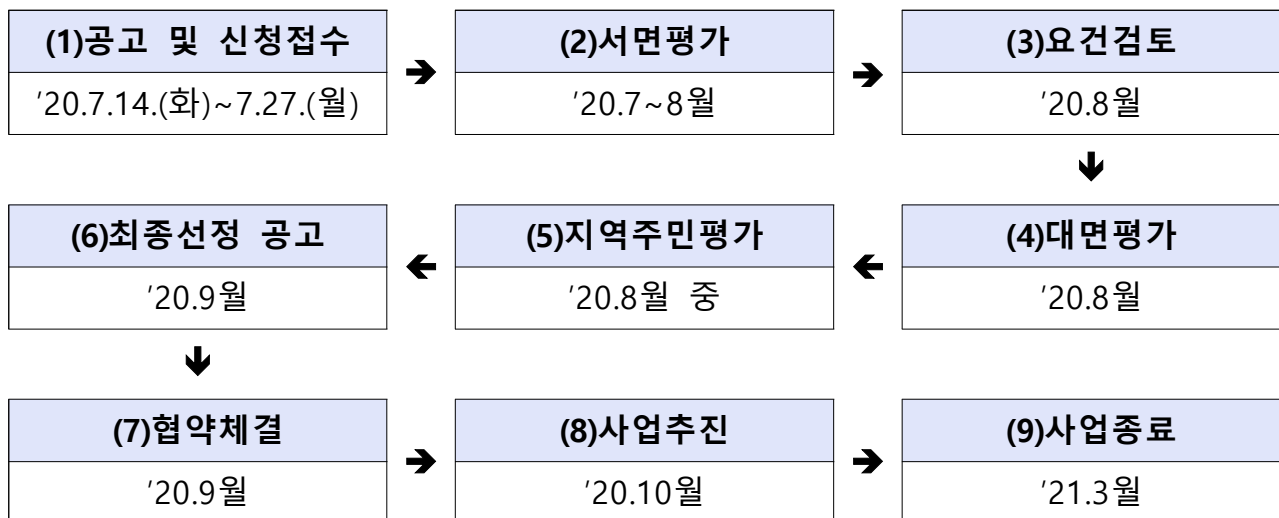
* **[참고1]** 투자유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건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지인 등의 투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추후 투자유치 증빙자료 제출必)

< '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지원개요 >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일반형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일반형 (지역특구연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민간투자 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3p)" 참조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사항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유형구분	지원대상	세부요건
일반형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7.1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아래 공통사항① 참조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일반형 (지역특구 연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역특구(참고3) 해당 시·군·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역 특구 특화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업자
민간투자 연계형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13.7.14. 이후 창업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아이টে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투자를 유치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설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④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필요 	
신청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라·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화 자금** : 서비스·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유형에 따라 지원
- (일반형)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일반형 : 지역특구 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민간투자 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9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1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3,340만원	3,000만원	340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본 사업은 인건비는 집행 불가)

항목	항목정의
재료비	사업 및 제품생산 등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일반용역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BM모델 수립, 마케팅 등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대가
⋮	

* 세부내역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관리기준] 참고

- **사업수행(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신청기간** : 2020년 7월 14일(화) ~ 2020년 7월 27일(월),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활용자원의 소재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 (예비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必(17개 시도기준)
(기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로 본점소재지 변경**必(17개 시도기준)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 단,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민간투자 연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추경)**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신청서류 업로드(용량제한*) → ⑧ 제출
- ※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必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 공고일('20.7.14.)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발급처) 세무서, 홈택스 등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투자유치 증빙서류 (민간투자 연계형)	•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투자계약서 ※ 추후 추가자료(납입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요청가능	

5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
1 단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구성 (대상) 사업신청자 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대면평가 대상선정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제외 * 투자연계형 신청자는 서면평가 면제이나, 지원자가 선정규모(20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평가 실시
2 단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구성하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대면평가 진행 코로나 등 대내외 상황으로 <u>온라인으로 진행(예정, 미확정)</u> (반영비율) 대면평가 90% + 지역주민평가 10%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평가 → 지역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 발표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가실시 (반영비율) 대면평가 90% + 지역주민평가 10%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문의

- 주관기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번호	소재지	주관기관명	연락처
1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5
2	경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0-5821
3	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64
4	경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1
5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57
6	대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6386
7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00
8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80
9	서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10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26
11	울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65
12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31
13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7
14	전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7
15	제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56
16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13
17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26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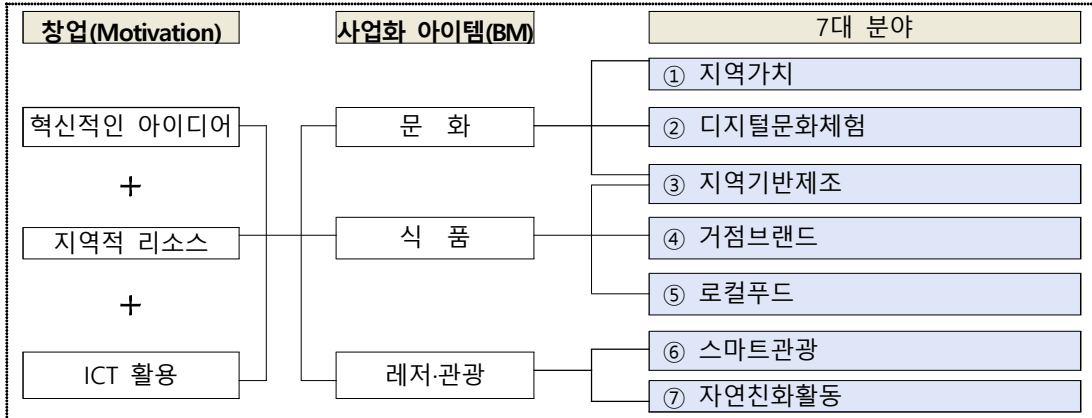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27항과 동법 제117조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자
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 >

-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코로나 이후)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IT,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작물 생산 · 지역에서 재배가능한 농수산물(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코로나 이후)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코로나 이후)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스마트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코로나 이후)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코로나 이후)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 (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시간여행) · (코로나 이후)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코로나 이후)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참고3

지역특구 현황(198개)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중 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007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2014년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2008년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2010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2017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2012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2017년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2006년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동구, 중구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2011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2018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원주 옷·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2006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옥천 옷산업특구	2005년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006년
	음성군	음성 다울찬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북 태양광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숲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갯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2007년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008년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공주시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010년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2006년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2004년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008년	
	여수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2006년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2006년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2006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년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2009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2009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광양시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2015년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2008년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2017년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2009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2005년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상주시	상주 꽃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2016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2006년
		김천 자두산업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2006년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007년
		영주 힐링특구	2014년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향노화힐링특구	2016년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2005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제주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2004년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